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98,072,084	50,942,163
일반회계	1,479,791,048	44,393,731
특별회계	218,281,036	6,548,431
공기업특별회계	177,710,134	5,331,30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0,734,069	2,422,0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6,976,065	2,909,282
기타특별회계	40,570,902	1,217,127
주택사업특별회계	78,103	2,343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949,403	268,482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311,791	279,354
교통사업특별회계	18,998,858	569,966
대지보상특별회계	1,064,687	31,941
수질개선특별회계	1,464,060	43,922

제 2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21,096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